



---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규정

---

2019. 5. 10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공연장(올림터) 운영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의 공연장이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장의 기능) 공연장은 창의적 문화공간 운영 및 공연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공연예술의 생활화를 선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한다.

제3조(공연장의 범위) 공연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올림터’
2. 2층 공연장 내 기타 부속 공간 및 부대설비

## 제2장 공연장 대관

제4조(대관의 정의)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행사 등을 위하여 공연장 및 부속 공간, 부대설비 등을 기념관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공연장 대관시설의 범위는 제3조의 ‘공연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과 같다.

제6조(대관의 종류)

1.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정기대관은 차기 1~2년간 공연 일정에 관한 대관이고,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대관이며 당해 년도에 수시로 이루어진다.
2. 원활한 공연장 운영과 공연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차기 3년 이후 공연에 대한 대관도 가능하다.
3. 기념관 주관 공연을 위한 대관은 타 대관에 우선한다.
4.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포함)과 공연목적 이외의 행사대관으로 구분한다.
5. 대관에 관한 일정 및 방법은 전태일기념관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7조(대관의 신청 및 승인)

1. 공연장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관신청서>에는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자와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 종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관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또는 공연장을 조정할 수 있다.
4. 대관자는 기념관이 요구하는 준비(셋업, 리허설), 철수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념관은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대관 신청의 제한)**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2. 특정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3. 공연장 시설·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4. 제15조에 의해 신청 자격이 정지된 단체 및 개인
5.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6. 공연장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② 위 3호 및 5호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은 특별히 공공성 및 문화예술 발전, 후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할 수 있다.

**제9조(대관 심의위원회)**

1. 대관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정기대관의 경우 문화예술자문위원회의 의원 및 내부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한다.
3. 수시대관 또는 작품변경 등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기념관 부관장(이하 ‘부관장’이라 한다)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사업팀장, 담당 위원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수시대관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4. 대관 심의기준은 대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5. 대관 여부는 대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6. 외부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정기 및 수시대관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기준	세부내용	비고
부합성(30%)	- 공연장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가?	
확장성(35%)	- 이번 공연을 통해 공연예술계에 확장이 가능한가?	
구체성(35%)	- 공연 계획 및 관객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인가?	

### 제10조(대관자의 의무 및 책임)

1.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극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 진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연장 및 부속 공간, 부대설비 등의 사용계획은 사전에 위원회의 소관 부서장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4. 대관자는 공연장의 매표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며, 기념관은 매표 담당 직원을 1인 이상 지원한다.
5. 대관자는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관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초대권 발행 매수를 기념관의 소관 부서장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대관의 변경)

1. 대관자는 대관승인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대관변경신청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일정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는 당초 승인받은 대관 시작일 60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념관은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사용 시간 등)

1. 공연장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공연장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이며, 식사시간(12:00~13:00과 17:00~18:00)은 제외한다. 단, 특별한 사유시에는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다.
3.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하루 1일 2회 이상 공연은 먼저 기념관과 협의해야 한다.
4. 설날, 추석 등 기타 휴무일은 별도로 정하여 대관공모 시 공지한다.
5. 공연장의 사용 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3조(방염 및 발화물질 등의 관리)

1. 대관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다.
2. 기념관은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인화성 물질(휘발유, 시너, 가스 등)과 담뱃불, 성냥, 라이터, 촛불, 화약류 등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기념관은 밀가루, 모래, 흙 등 분진 및 먼지에 의한 기계오작동 유발 품목 등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물 등 액체류 사용으로 인한 하부기계 오작동 또는 주변 기기 장애가 발생 가능한 품목

등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기념관은 「공연법」 제11조의5에 따라 화재 등 재해나 위급사항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라 객석을 운용하며, 대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① 공연장으로 등록된 객석수를 초과하여 보조석 등을 운용할 수 없다. ② 단, 작품의 특성상 개축 객석을 사용해야 할 경우, 기념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사전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 **제14조(홍보, 자료제출, 작품 촬영, 녹화, 방송, 판촉 등)**

1. 대관자는 공연과 관련한 포스터, 전단, 프로그램 등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이전에 그 내용과 표현에 대해 반드시 기념관과 협의 후 제작 및 발행, 부착, 배포하여야 하며, 기념관이 규정하는 로고 및 BI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대관자는 기념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 설치하여 발생하는 민원,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
3. 대관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료(포스터, 팸플릿, 리플렛, 대본, 보도자료,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사진자료, 영상자료 등)를 기념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기념관의 자료로 활용되는 데 동의한다.
4. 기념관은 대관자가 제출한 이 규정 제2장 제14조 제3호의 자료에 대해 대관자의 저작권적 권리를 인정하며 보존 및 열람, 호보, 전시, 교육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대관자가 공연하고자 하는 대관자의 저작물의 내용과 홍보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도 전액 대관자가 부담한다.
6. 공연의 촬영, 녹화, 방영권은 대관자에게 귀속된다. 단, 기념관은 홍보, 교육이나 자료용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공연을 촬영, 또는 방영할 수 있다.
7. 대관자는 공연의 중계 및 실황 녹화를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사전에 기념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제3장 문화예술자문위원회**

#### **제15조(문화예술자문위원회)**

1. 공연장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공연장 운영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중장기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공모사업, 초청공연의 심의 및 심의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연장 운영 관련 국제교류·자료수집·조사연구 등 사업 및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 및 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회의)**

1. 문화예술자문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논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문화예술자문회의는 사안에 따라 자문위원 이외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수당)** 문화예술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회의수당 및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지 제1호】 공연장 대관 신청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대관 신청서**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대관 신청 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대관신청 처리 및 전태일기념관 대관 정보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및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관신청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1. 대관신청자**

단체(개인)명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번호	(※없을 시 미작성) (※세금계산서 발행용)	
소재지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2. 대관신청 내용**

공연(행사)명	
공연(행사)기간	
사용목적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행사
장르구분	<input type="checkbox"/> 연극 <input type="checkbox"/> 무용 <input type="checkbox"/> 음악 <input type="checkbox"/> 다원예술 <input type="checkbox"/> 시각예술 <input type="checkbox"/> 전통예술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요 내용 (2매 이내)	당신의 작품을 소개해주세요. (기획의도, 작품소개 등)  이번 공연을 통해 어떤 관객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전태일기념관에서 이번 공연을 하고 싶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대관신청 내용**

대관기간		20 . . . ~ 20 . . . (총 일)			
사용시간	준비(연습) 및 철수	오전 (10:00-12:00)	오후1 (13:00~15:00)	오후2 (15:00~17:00)	야간 (18:00-22:00)
		( 회)	( 회)	( 회)	( 회)
	공연 행사	오전 (10:00-12:00)	오후1 (13:00~15:00)	오후2 (15:00~17:00)	야간 (18:00-22:00)
		( 회)	( 회)	( 회)	( 회)

기념관의 규정과 대관 신청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기념관 공연장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개인의 경우 성명) : (인/서명)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장 귀하



【별지 제2호】 공연장 대관 계약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대관 계약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올림터)을 대관함에 있어서 전태일기념관 관장을 “기념관”, 대관자를 “사용자” 라 하고 다음 조건으로 대관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당사자)
1. “기념관” : 전태일기념관 관장
  2. “사용자” :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사업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제2조(계약내용)
1. 공연(행사)명 :
  2. 장 소 :
  3.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일 시간 분)
- 준비 및 연습 :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회)
- 공 연 :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총 회)
- 철 수 :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총 회)
- 냉난방기 사용시간 :

- 제3조(입장권에 관한 사항)
1. 공연장 사용내규 제9조에 의거 공연 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연 1회당 3석의 유보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입장권은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3. “사용자” 는 “기념관” 과 협의를 거쳐 “기념관” 이 정한 대상에게 입장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대관자의 행위제한) “사용자” 는 “기념관” 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관승인조건 신청인 또는 공연자 변경행위
2. 대관시설 변경 행위
3. 대관 공연일정 변경 행위
4. 공연명(내용) 변경 행위
5. 공연장 사용권의 전대 또는 양도 행위
6. 공연장 내에서의 수익활동 일체

#### 제5조(대관자의 안전관리)

1. 공연,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 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공연장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외부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념관”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6조(대관자의 설비)

1.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기념관 “의 승인을 받아 ” 사용자 “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준비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 중 공연장 보유의 장비를 선량한 의도로 사용해야 하며, 직원의 안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부주의 및 무리한 장비사용에 의한 장비훼손, 파손 및 분실 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제7조(사전협의 사항) 공연전에 “사용자”는 “기념관”에게 각호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무대기술관련 자료
  - 가. 공연대본, 시놉시스 1부
  - 나. 무대장치 평면도 1부
  - 다. 무대장치 입면도 및 스케치 1부
  - 라. 조명 Plot 1부(외부디자인일 경우)
  - 마. 조명기 사용 목록
2. 무대기계 상하부 기계사용 계획 1부

3. 공연진행 큐시트 1부
4. 공연세부 안내자료
5. 공연일정표(작업 및 리허설, 공연일정 등)
6. 방염관련 서류(아래 3가지 양식 중 1가지 제출)
  - 가. 방염성능시험성적서(소방서발급)
  - 나. 방염성능 검사확인서(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
  - 다.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예:섬유기술연구소 등)
7. 기념관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포스터
8. 부대설비 및 장비 대여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제8조(해약 및 정지명령)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념관”은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 대관계약 및 대관규정, 내규에 위반하였을 때
2. 재해나 공연장 안전문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4.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 공안질서유지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6. 기타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7. 대관승인 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제9조(배상책임)

1. “기념관”은 “사용자”가 제5조에 해당되어 대관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기념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념관”이 책임을 진다.

제10조(적용규정) 전태일기념관의 공연장 사용규정 및 동 내규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되며, 관련법령 및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념관”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증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전태일기념관 관장

(인)

사용자

(인)

**【별지 제3호】 공연장 추가사용신청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추가사용신청서**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추가사용 신청 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추가사용 신청 처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및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태일기념관이 정한 보유기간에 따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관신청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1. 대관신청자**

단체(개인)명			공연(행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2. 추가사용내역**

당초 사용기간	. . . ~ . . . (오전 회, 오후1 회, 오후2 회, 야간 회)
변경 사용기간	. . . ~ . . . (오전 회, 오후1 회, 오후2 회, 야간 회)
조명장비 추가	
음향장비 추가	

**3. 추가사용사유**

추가사용 사유	
------------	--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대관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개인의 경우 성명) : (인/서명)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관장 귀하

**【별지 제4호】 공연장 대관변경/대관취소 신청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대관변경/취소 신청서**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대관변경/대관취소 신청 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대관변경/대관취소 신청 처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및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태일기념관이 정한 보유기간에 따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관신청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1. 대관신청자**

대관승인(계약)번호	제 호		
대표자(개인)명		연락처	

**2. 대관변경/취소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공연(행사)명		
공연(행사)기간		
공연(행사)내용		
변경/취소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대관승인 건에 대하여 (대관변경, 대관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개인의 경우 성명) : (인/서명)

전태일기념관 관장 귀하

## 【별지 제5호】 공연장 부대설비 및 장비임차 신청서

###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부대설비 및 장비임차 신청서

※전태일기념관은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부대설비 및 장비임차 신청 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부대설비 및 장비임차 신청 처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및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태일기념관이 정한 보유기간에 따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관신청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스탭회의		<input type="checkbox"/> 최종확인			
단 체 명				대 표 자			
공 연 명				담 당 자			
사용기간				전화번호			
품명	규격	단가	사용량		기간	금액(원)	비고
			일/회	수량			
무대	전동스크린	150인치	무료	일	~		
조명	Ellipsoidal Light	Source Four50' HPL 750W	무료	일	~		
		Source Four Zoom 25'-50' 750W	무료	일	~		
	PAR Light	CP 62/1000W	무료	일	~		
	LED PAR Light	Rush Par 2 RGBW ZOOM	무료	일	~		
	Fresnel Spot Light	F51 18'~65'HL 500W	무료	일	~		
	Console	TIGER TOUCH	무료	일			
음향	녹음 (파일)		1회 공연기준	무료	회	~	
	녹화	극장	1회 공연기준	무료	회	~	
	콘솔		TF3 (24CH YAMAHA)	무료	일	~	
	마이크	유선	다이내믹	무료	일	~	
			구즈넥마이크	무료	일	~	
		무선	핸드 / 핀 마이크	무료	일	~	
	무대 모니터		1조	무료	일	~	
	LCD프로젝터	6500ANSI / 1일사용기준		무료	일	~	
4500ANSI / 1일사용기준		무료	일	~		WUXGA	
※사용자의 과실로 장비의 이상 발생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부대설비 및 장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전태일기념관 관장 귀하							

※ 부대설비 및 장비 사용기간 산출은 대관신청 시작일로부터 마지막 일까지로 함

※ 사용자의 과실로 장비의 이상 발생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